

WE ARE YOUR DOL



Department of Labor

## 농장 근로자를 위한 보호

귀하에게 중요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취업과 관련된 연방법과 주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주거

귀하가 직업의 일환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특정 안전 및 보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귀하에게 살 곳을 제공하더라도 안전하지 않거나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가장 가까운 미국 노동부(USDOL) 근로 시간 및 임금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귀하의 주거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무료 전화 번호는 **866-487-9243**입니다. 무료 전화 **1-800-458-1158**, 내선 **27600** 번으로 뉴욕주 보건부 지역 환경 보건 및 식품 보호국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 급여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용 조건을 명시한 서면 합의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에는 귀하의 급여율 및 급여를 시급으로 받을지 또는 도급으로 받을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계약을 준수해야 하며 귀하의 급여는 최저 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일주일에 56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정규 임금의 1.5배의 요율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1/24 - 12/31/24

뉴욕시 \$16.00/시간

Long Island 및 Westchester 카운티 \$16.00/시간

뉴욕주의 그 외 지역 \$15.00/시간

### 쉬는 날

2020년 1월 1일부터 귀하는 매주 최소 1일(24시간 연속)의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한, 쉬는 날에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888-469-7365** 번으로 가장 가까운 뉴욕시 노동부 근로기준법 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함
- 약속된 급여를 모두 받지 못함
- 급여가 최저 임금보다 적음
-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함
- 주중에 쉬는 날이 거부되거나 지정된 쉬는 날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함

### 교통 수단

농장 근로 계약업체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일하는 경우, 귀하가 타는 차량은 반드시 연방 또는 주정부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업체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가장 가까운 USDOL 근로 시간 및 임금 담당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무료 전화 번호는 **866-487-9243**입니다.

### 근로 조건

연방 및 주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또는 복지를 위협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 조건이 안전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이라고 판단되면 가까운 USDOL 근로 시간 및 임금 담당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무료 전화 번호는 **866-487-9243**입니다.

## 기타 보호

- 귀하는 직장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산재 보상을 통보받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격이 되는 경우, 귀하는 직무 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장애 혜택(DB)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지원하기 위한 유급 가족 휴가(PFL) 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 H-2A 외국인 게스트 근로자는 실업 보험 보장에서 제외됨)
- 귀하는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추구하기 위해 노동 조직을 구성, 가입 또는 지원할 권리가 있으며 단체협상권도 있습니다.

## 민원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뉴욕주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노동부가 귀하를 보낸 일자리에 대해 고용주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 주 노동부에서 받은 서비스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불만이 그 밖에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면, 노동부 직원이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기관을 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전화번호부의 파란색 페이지에 나오는 가장 가까운 NYS 뉴욕주 노동부 사무실에 연락하거나 **888-469-7365** 번으로 전화하십시오.